

#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8,834,240	7,465,027
일반회계	232,394,765	6,971,843
특별회계	16,439,475	493,184
기타특별회계	16,439,475	493,1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8,436	22,453
주택사업특별회계	339,406	10,182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67,000	5,0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5,597	24,16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45,106	16,353
주차장특별회계	132,500	3,975
수질개선특별회계	12,201,430	366,04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0,000	3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00	15,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20,10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